

●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2903)**

2025. 9.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번호 2903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홍국표 의원(찬성 32명)
나. 제출일 : 2025년 8월 7일
다.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현재 조례는 월동대책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폭염기에 대비한 지원 예산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별로 지원의 필요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겨울 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월동대책비 및 폭염대비비’로 개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철하인 동행매력특별시에도 부합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5조 제8호 중 ‘월동대책비’ 명칭을 ‘월동대책비 및 폭염대비비’로 변경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II.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 제8호의 ‘월동대책비 지원’을 ‘월동대책비 및 폭염대비비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의 범위를 여름철 폭염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월동대책비</u> 지원	8. <u>월동대책비 및 폭염대비비</u> -----
9. ~ 12.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는 월동대책비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어 폭염기에 대비한 지원 근거는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례상 명확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생활안정지원의 대상으로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서울형 긴급복지·서울 디딤돌소득 대상자 등으로 함.
 -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장제비, 급식관련경비, 교육관련경비, 명절보상품, 월동대책비, 문화체육활동경비, 재난발생시 생활비, 이사경비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됨.
- 서울시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 기본 생활비가 비교적 높은 저소득 시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동일 수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외 자체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자체 부가급여에는 중고생교통비, 명절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냉난방비 등이 있음.
 - 월동대책비로 가구당 연 5만원, 시설수급자에게 연 4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냉·난방비로 한시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에 연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내역>

(202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예산액
합계				87,644
교 육 경 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560명)	교통비(중·고생)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432천원 (분기별108,000원×4)	4,571
명절위문품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78,000가구)	설,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연 60천원 (각 3만원)	14,953
월 동 대 책 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보훈대상자 (248,000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12,711
냉·난 방 비 (재난기금 한시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371,000가구)	냉방비 난방비	가구당 연50천원 가구당 연100천원	55,409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2025년 기준)

구 분	법 정 지 원 내 용					서울시 부가급여
생 계 급 여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월 최대 765,444원 4인가구 월 최대 1,951,287원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월동대책비 연 40천원 · 명절특별위로금 연 100천원	중고생교통비 연 432천원, 명절위문품비* 연 60천원, 월동대책비 연 50천원, 냉·난방비(한시) 연 150천원
의 료 급 여 (중위소득 40% 이하)	1종 본인 부담	입원	부담비 없음	-		
		외래 (개편전)	(의원)1,000원 (병원)1,500원 (상급)2,000원	약국 500원		
	2종 본인 부담	입원	10%	-		
외래 (개편전)		(의원)1,000원 (병원,상급) 15%	약국 500원			
주 거 급 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료	1인가구 월 최대 352,000원 4인가구 월 최대 667,000원				냉·난방비(한시) 연 150천원
	수선비	경·중·대보수 연590만원~연1,601만원 (3·5·7년 주기)				
교 육 급 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활동 지원비	초·중·고등 학생 연487,000원~768,000원			※보장시설수급자 · 월동대책비, 명절 특별위로금 지급	

*명절위문품비는 20개 자치구에서 구비로 명절마다 1~5만원까지 추가 지급 중(양천, 강남은 차상위계층 포함 지급)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및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공 통	개 별
차 상 위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경감, 열요금할인, 학교우유급식 정부양곡할인 등 / 서울시 냉·난방비(한시) 연 150천원	장애수당 (시설)월 6만원 (재가)월 4만원
	차상위자활	근로능력이 있고, 비수급권자 이면서 자활근로 참여 신청한 자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료 지원 등
	차상위계층 확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등 보호제도 대상이 아닌 자		-
한 부 모	모자·조손·부자가족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연 9.3만원 등 / 서울시 냉·난방비(한시) 연 150천원	조손가족, 청년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월 5~10만원 추가지급
	청소년한부모 모자·부자가족			

- 중앙정부차원에서 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냉·난방 지원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이 연평균 36.7만원 지원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최대 월 16천원(연 19.2만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음. 또한 도시가스공사의 부과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감면도 실시되고 있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4년 기준)

가구원수	하 절 기	동 절 기	총 액
1인	55,700	254,500	310,200
2인	73,800	348,700	422,500
3인	90,800	456,900	547,700
4인	117,000	599,300	716,300

- 명칭 및 지원부처, 예산에는 차이가 있으나 취약계층의 한파 및 폭염 대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음.

※ 집행부 의견 : 수정가결

- 원안가결시, 폭염대비비가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에 추가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월동대책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1999년) 전 복지제도가 미비할 때 김장비·침구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 1980년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폭염대비비를 신설하는 것은 예산마련 및 중복지원의 문제로 시행 예정 없음.
- 제5조 제8호를 변경하는 것 대신 폭염 및 한파 대응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 중 ‘월동대책비 지원’을 ‘월동대책비 및 폭염대비비 지원’으로 개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의 범위를 여름철까지 확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월동대책비’와 같은 조항에 ‘폭염대비비’를 추가하는 방식은 서울시의 부가급여 사업으로 명시화될 수 있어 조례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법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시 중복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추계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를 위해 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사업이 서울시 및 여러 부처를 통해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수정안을 통해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진영	02-2180-8140